

제 호

##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- 명칭:
- 소재지:
- 대표자: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4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